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92

발의연월일: 2022. 10. 31.

발 의 자: 허은아 · 권성동 · 박성중

박정하 • 백종헌 • 서일준

이만희 • 장동혁 • 최영희

홍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혁신기술을 통해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20.6.9.)하여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신청 주체가 매우 한정적이고 타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달리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특구 내 혁신기술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검증해볼 수 있는 제도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특구 내의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할 때 규제에 대한 제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특구 내 기업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때 공공기 술을 이전받은 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참여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이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모호, 불합리할 때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 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로서의 체계성을 높이고, 기존의 실증특례 제도가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 내 신기술이 더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 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이외에 법령 정비 요청권의 도입, 신청인의 실증특례 지정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 도입, 실증특례의 요건에 대한 명확화 등으로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실증특례 신청주체 확대 및 법령 정비 요청권 신설 등(안 제16조 의2)
 - 1) 특구 기업의 단독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구 및 단서 조항 삭제 및 실증특례 신청 요건 규정 명확화
 - 2) 실증특례 심의 시 고려해야하는 사항 구체화

- 3)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변경 요청 절차 및 법령 정비 요청권 신설
- 나. 규제 신속확인 제도 도입(안 제16조의6 신설)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국민이 신속히 확인 할 수 있는 신속확인 조항 신설

다. 임시허가 제도 도입(안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 신설)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모호, 불합리할 때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조항 등 신설

라. 임시허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신설(안 제74조제2항 제2호 및 제7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실증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신고·지정·동의·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14.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3제1항 본문 중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을 "실증 을"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의2 중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에"를 "실증 특례 및 임시허가에"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를 "허가등의"로, "법령에 해당 신기술에 맞는"을 "법령 등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령에"를 "법령 등에"로, "해당 신기술에 적용하는"을 "적용하는"으로, "맞지 아니한"을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혁신성"을 "혁신성 및 안정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에서"로 한다.

- 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 ⑦ 실증특례의 신청이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신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 할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있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시작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수 있다.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내 신

- 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요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특구에서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1.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신청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경우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 결과를 붙여 임시허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 1.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여부
-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 자의 편익
-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 4. 임시허가의 적정성
-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 ⑦ 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제5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 제품으로 인하여

-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0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 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제16조의7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 임시허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

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심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 제76조제2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7. 제16조의7제1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 다)
 - 8.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9. 제1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 술 서비스·제품을 판매·이용 또는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3. "실증특례"란 신기술을 창
	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 승인 · 인증 · 검증 · 인
	<u> 가・등록・신고・지정・동의</u>
	•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
	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
	<u>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u>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
	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
	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
	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
	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
	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의3(우선허용·사후규제 원 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연구기관 등의 연구 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 (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 제7조(연구개발특구 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 -----

14.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 · 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하는 것을 말한다.

ll3조의3(우선허용·사후규제	원
칙) ①	
<u>실증을</u>	
, -	
② (현행과 같음)	
세7조(연구개발특구위워회) ①	

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 6. (생략)
- 6의2. <u>제16조의2제1항에 따른</u> <u>실증특례에</u> 관한 사항
- 7. · 8. (생략)
- ② ~ ⑦ (생 략)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 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하여 해 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특구에서 적용 하지 아니하는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우에 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 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 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1. ~ 6. (현행과 같음)
6의2. <u>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u> -
7.·8.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자는-
<u>, L</u>
<u><단서 삭제></u>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 1. <u>허가·승인·인증·검증·인</u>
 <u>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u>
 <u>다)의</u> 근거가 되는 <u>법령에</u>
 <u>해당 신기술에 맞는</u> 기준·
 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u>법령</u>
 <u>에</u>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u>해당 신기술에 적용하</u>
 는 것이 <u>맞지 아니한</u> 경우
 3. (생 략)
- ② ~ ⑤ (생 략)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1. 해당 신기술의 <u>혁신성</u>

2.·3. (생략) <신설>

1. 허가등의
버러 드시
<u>법령 등에</u>
<u> 따른</u>
2 <u>법</u> 령
<u>등에</u>
<u>적용하는</u>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6
,
,
1 <u>혁신성 및 안</u>
정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u>편익</u>
2. • 3. (현행과 같음)
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

<u>4.</u> (생 략) <신 설>

⑦· ⑧ (생 략)

<신 설>

<신 설>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방안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① 실증특례의 신청이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u>③</u>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①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신 설>

<신 설>

⑨ 제1항부터 <u>제8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데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시작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u>14</u>)	;	제13항까지에서-

령으로 정한다. <신 설>

-----.

-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
 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
 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해당 요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 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 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 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

<신 설>

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특구에서 신기술 서비스・
 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1.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 거나 불합리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 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임시허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1.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

 전한 보호·처리 여부
-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 른 이용자의 편익
-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

 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 4. 임시허가의 적정성
-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① 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제5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 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련된 법 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 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령 등의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

<신 설>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0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 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 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 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 한다.

①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제16조의7제6항에 따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 임시허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 ·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 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 ·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

제74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2.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u>스·제품</u>	의 판미	· 이용	또는
제공 등을	을 하여서	는 아니	<u> 된다.</u>
⑤ 임시	허가의 출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심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렁으로
<u>정한다.</u>			

제7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
	-
	-

- 1. (현행과 같음)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 허가를 받은 자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7. 제16조의7제1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 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

	우는 제외한다)
<u><신 설></u>	8.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명령
	<u>을 위반한 자</u>
<u> <신 설></u>	9. 제1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해
	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판
	매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